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박인진

건명: 송희만 소유물건  
(2025타경1622)

평가서번호: 중 앙 022025-0512-0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중앙감정평가법인

Joong-ang Appraisal Co., Ltd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29 로얄플라자 909호외  
(부평동)  
경인지사 : T) 032-428-0428 F) 428-2121  
e-mail : jungang2@kapaland.co.kr  
home-page : <http://www.jaa.co.kr>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원복

李元福



(주)중앙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장

이창훈



감정평가액	육천일백만원정 (₩61,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박인진		감정평가목적	경매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7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송희만 (2025타경1622)		감정평가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5.13	2025.05.13	2025.05.13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원)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61,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61,000,000

심사확인은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고두현

高斗鉉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신중동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디아뜨갤러리3 제비동 제4층 제415호)로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7계의 경매목적에 위한 감정평가임.

### 2. 감정평가의 근거 및 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가. 본건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 4.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년 5월 13일을 기준시점으로 결정함.

###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본건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5월 13일에 시행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6. 감정평가 방법

#### 가. 감정평가방식

- 1)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2) 비교방식 :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3)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나. 구분건물

##### 1) 구분건물의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동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함.

##### 2) 적용 감정평가방법

- (1) 거래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임.
- (2) 시산가액 조정 : 본건은 구분소유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본건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 다. 일괄 · 구분 · 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라. 기타 감정평가 관련 사항

해당 없음.

### 7. 그 밖의 사항

- 가.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바,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목적)에 의거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한국 부동산연구원에서 제시한 토지, 건물 배분비율표를 참조하여 “(구분건물)감정평가 명세표”에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가. 본건은 현장조사 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내부구조를 확인치 못하여 인근 유사물건의 표준적 이용을 기준하였음.
- 나. 본건의 위치확인은 현장조사에 의거하였으며, 본건은 공부상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 대상 부동산의 개황

#### 1. 감정평가 대상 개요

##### 가. 전체 단지 개요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25 (중동)		
건물명	디아뜨갤러리3 제비동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층수(지하/지상)	지하4층/지상15층
주용도	업무시설,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지규모	282가구
사용승인일	2004.02.03	대지면적(㎡)	1,225.4
연면적(㎡)	14,914.22 ㎡	비고	-

##### 나. 대상 구분건물 개요

기호	동/층/호수	용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대지권면적 (㎡)	전용률 (%)
가	비/4/415	오피스텔	17.41	16.3	33.71	2.68	51.65
합계	-	-	17.41	16.3	33.71	2.68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산출

####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 2. 거래사례의 선정

##### 가.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사례자료

##### ■ 거래사례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구분	소재지 및 건물명, 동/층/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면적(㎡)	거래금액(원)	전유단가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
#1	매매	중동 1□□□-□ 디□□□□□3 비/11/11□□	17.41	2.68	62,500,000	3,590,000	2024.05.20
							2004.02.03
#2	매매	중동 1□□□-□ 긱□□□□□□3차 -/11/11□□	21.6	3.2909	75,000,000	3,472,000	2023.06.16
							2003.11.07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평가사례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 HUB PLUS]

기호	구분	소재지 및 건물명, 동/층/호수	전유면적 (㎡)	평가금액(원)	전유단가 (원/㎡)	기준시점
						사용승인
(3)	법원 경매	중동 1□□□-□ 디□□□□□3 비/7/7□□	27.75	99,000,000	3,568,000	2023.08.25
						2004.02.03
(4)	법원 경매	중동 1□□□-□ 디□□□□□3 비/10/10□□	27.75	94,400,000	3,402,000	2025.01.23
						2004.02.03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나.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경매 낙찰가율

#### 1)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상기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한 가격자료 등을 검토할 때,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은 아래와 같이 파악됨.

구분	가격수준	비고
인근 유사 오피스텔	전유면적 기준 단가: 3,400,000 ~ 3,600,000원/㎡	-

#### 2) 경매 낙찰가율

[자료출처 : 인포케어]

지역 및 기간	경기 부천시 원미구 2024년 05월 ~ 2025년 04월					
구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오피스텔(주거)	15,480,000,000	13,083,497,487	84.5	182	62	34.1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다.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비교적 최근에 거래되고 본건과 제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1>을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 3.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므로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1.00)

### 4. 시점수정

#### ■ 비교거래사례#1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오피스텔(주거용)(경기)”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결정함.

본건의 기준시점 매매가격지수(2025.03)	97.69
사례의 매매시점 매매가격지수(2023.11)	99.22
시점수정치 (본건지수/사례지수)	$97.69 / 99.22 \approx 0.98458$

※ 미발표된 월의 매매가격지수는 발표된 매매가격지수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5. 가치형성요인 비교

#### ■ 기호(가)/거래사례#1

요인	세부항목	격차율	비 고
단지 외부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단지 내부 요인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시공업체의 브랜드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내부 평면방식(베이)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감정평가목적 및 부동산 경기상황 등을 고려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비교사례 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	전유 면적(㎡)	산정가액(원)	적용가액(원)
가	3,590,000	1.00	0.98458	1.000	3,534,642	17.41	61,538,117	61,000,000
합계		-	-	-	-	-	61,538,117	61,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V.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 1. 감정평가액

기호	동/층/호수	전유면적(㎡)	감정평가액(원)	전유면적당 단가 (원/㎡)
가	비/4/415	17.41	61,000,000	3,504,000
합 계			61,000,000	-

#### 2. 결정의견

본건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다른 감정평가방법(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기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원)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25	1144-2 디아프 갤러리3 제비동	업무시설 및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15층									
					지하4층	978.42							
					지하3층	959.14							
					지하2층	1,062.30							
					지하1층	1,062.30							
					1층	685.88							
					2층	752.34							
					3층	750.83							
					4층~13층 각	743.21							
					14층	682.03							
					15층	548.88							
							1144-2	대	중심상업지역	1,225.4			
									(내) 철근 콘크리트조 제4층 제415호	17.41	17.41	61,000,000	공용면적 : 16.3㎡
									1 소유권대지권	2.68	2.68		
										1,225.4x----- 1,225.4			
						<b>합 계</b>						<b>₩61,000,000</b>	
												- 이 하 여 백 -	

# 구분건물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북동측 인근에 지하철역 '신중동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5층 건물로서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창호 : PVC창호 등임.

## 4. 이용상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 5. 설비내역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전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임.

## 7. 인접 도로상태 등

# 구분건물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본건 소재 부지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계남유치원-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계남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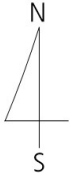
##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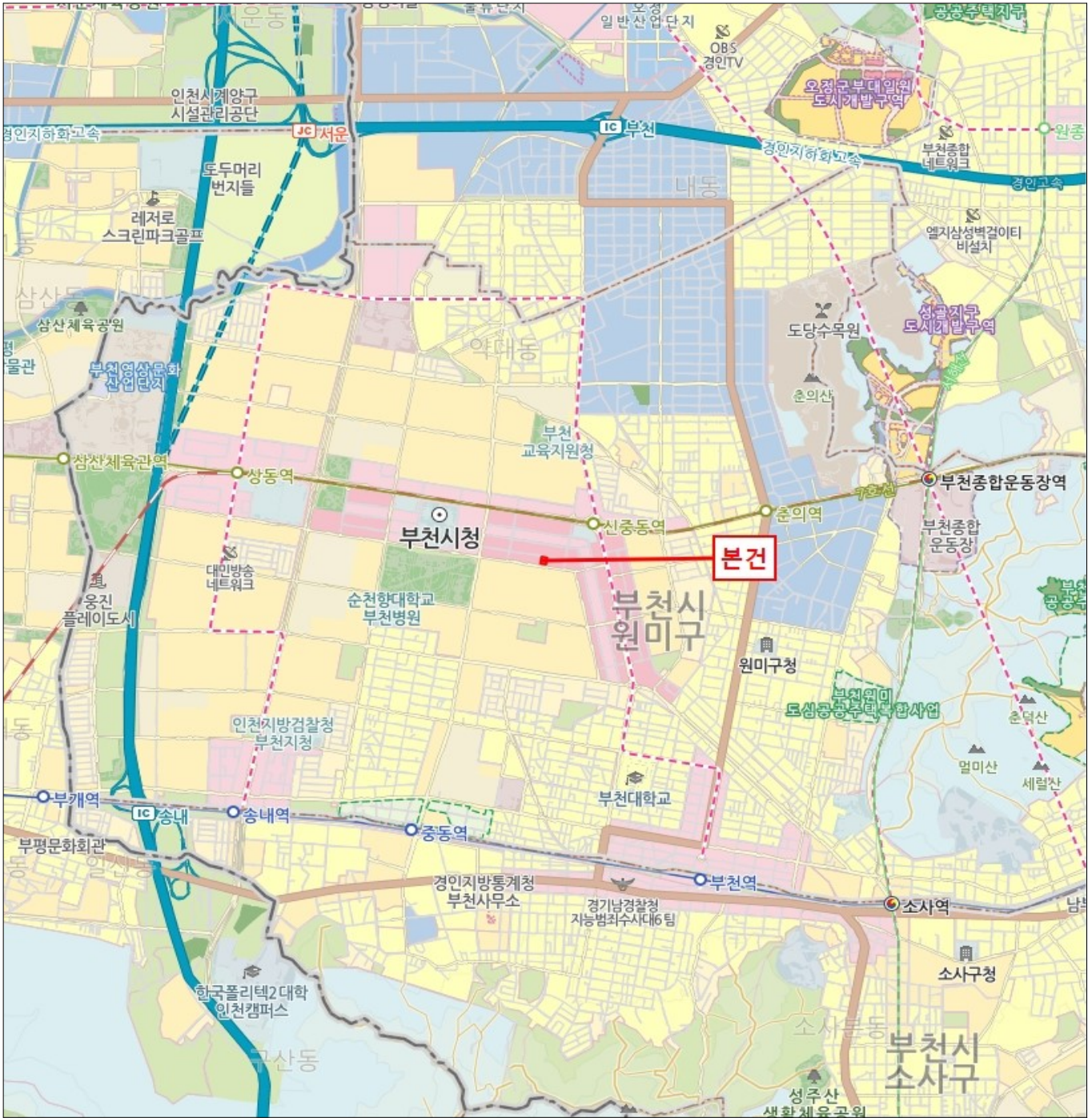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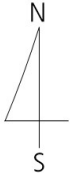
# 광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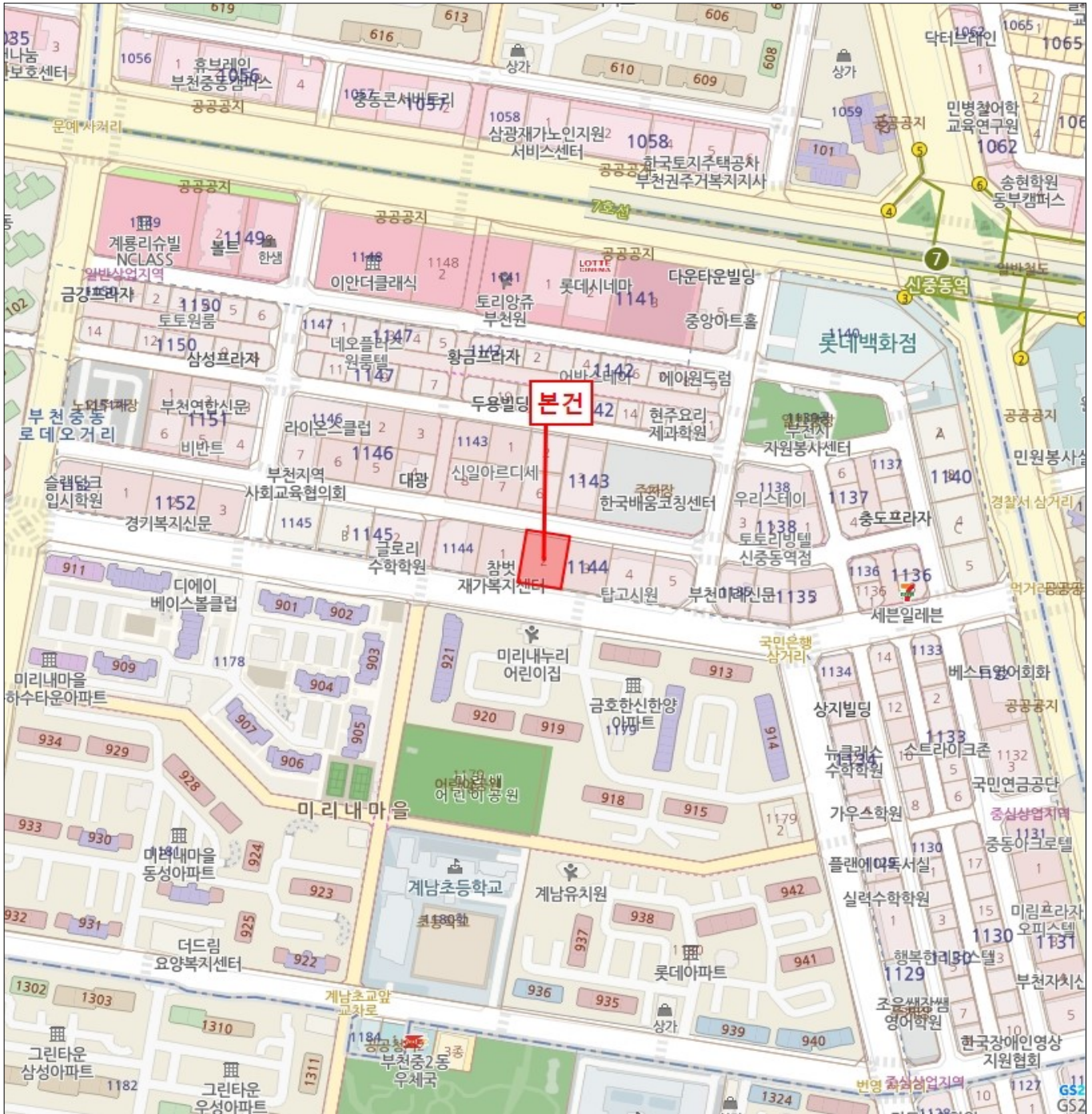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소향로225) 디아드갤러리3 제비동 제4층 제415호
-----	--



# 상세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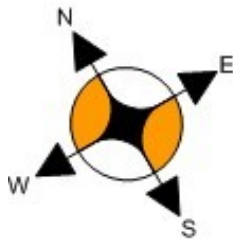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소향로225) 디아드갤러리3 제비동 제4층 제415호
-----	--



# 건물개황도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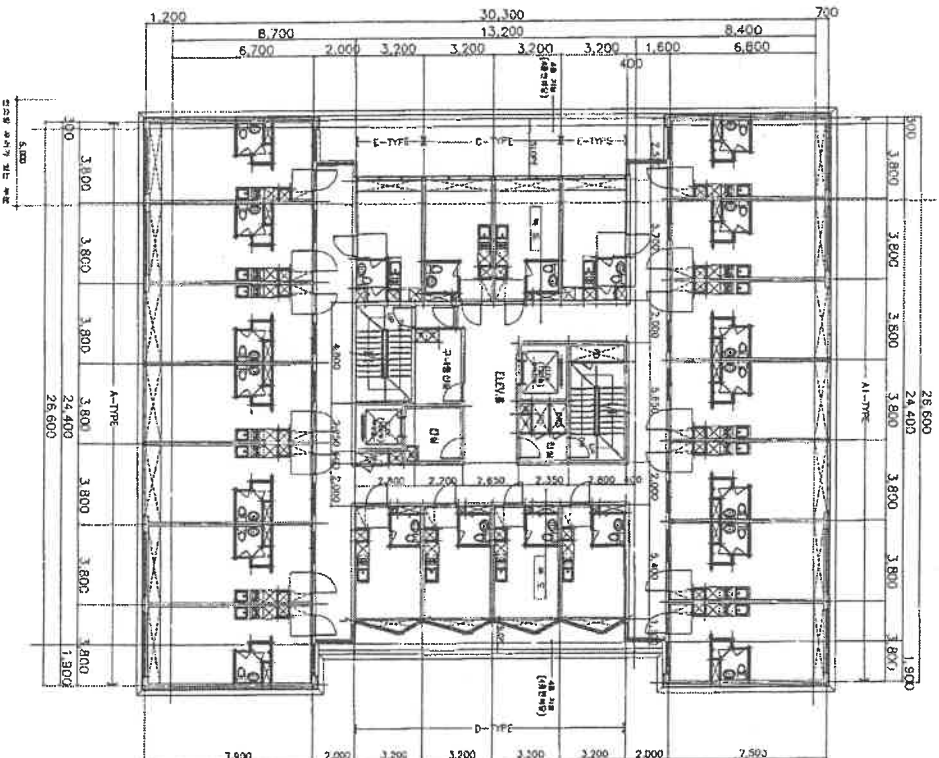


본건(디아프갤러리3 제비동 제4층 제415호)

# 건축물현황도

(1쪽 중 제1쪽)

건물ID	2120041970017711	고유번호	4119210800-3-11440002	명칭	호수기구수세대수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번	1144-2	도로명주소	0호/2827구/0세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항로 225 (중동)



0087  
 2025.5.13  
 도면의 효용일  
 5G4D01  
 중지발행시각: 09:19:36.415

평면도(4층)

축척

1 : 300

도면 작성자

(주)조임건축사사무소 건축사(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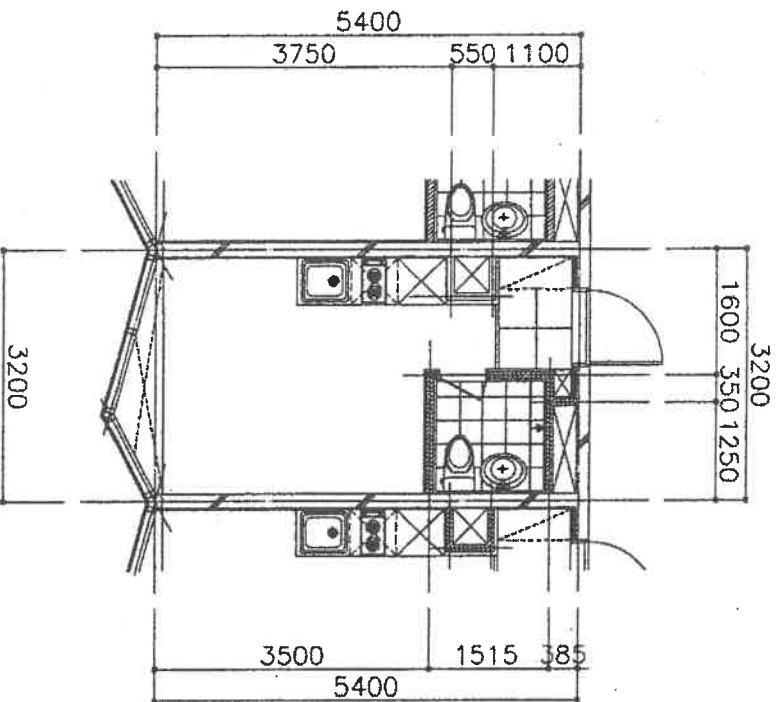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수입증지가 인영이 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현황도

(1쪽 중 제1쪽)

건물ID	22200041970064321	고유번호	4119210800-3-11440002	명칭	디아프갤러리3B동	호명칭	
대지위치	경기도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번	1144-2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항로 225 (중동)		415



도면-부평구 100원	0088	평면도	축척	1 : 120	도면 작성자	(주)조암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진욱 (서명 또는 인)
SG4D01		* 건축물현황도를 단위 대행도면 작성하며, 평면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 09:1936418  
SG4D0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수입증지가 인영이 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297mm×210mm [백상지 (80g/㎡)]



# 사진용지



북서측



기호(가)



북서측

# (주)중앙감정평가법인

( TEL: 032-428-0428, FAX: 032-428-2121 )

문서번호 : 중앙 022025-0512-003

수 신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박인진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5.05.12 자 귀 제 『

2025타경1622

』호로

의뢰하신 『

송희만님 관련물건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평가보수

## 청 구 내 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290,000	기본수수료 ≒290,000
실 비	여비교통비	110,0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10,000
	공부발급비	2,200
	기 타 실 비	3,000
	특별용역비	—
소 계	125,200	
공 급 가 액	415,000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가 치 세	41,500	
합 계	456,5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456,500	

붙 임 : 감정평가서 1부

나. 송 금 처 『 사업자등록번호 : 122-85-20259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인 "0512003" 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 인 지 사 장



발급번호 : 202541192005207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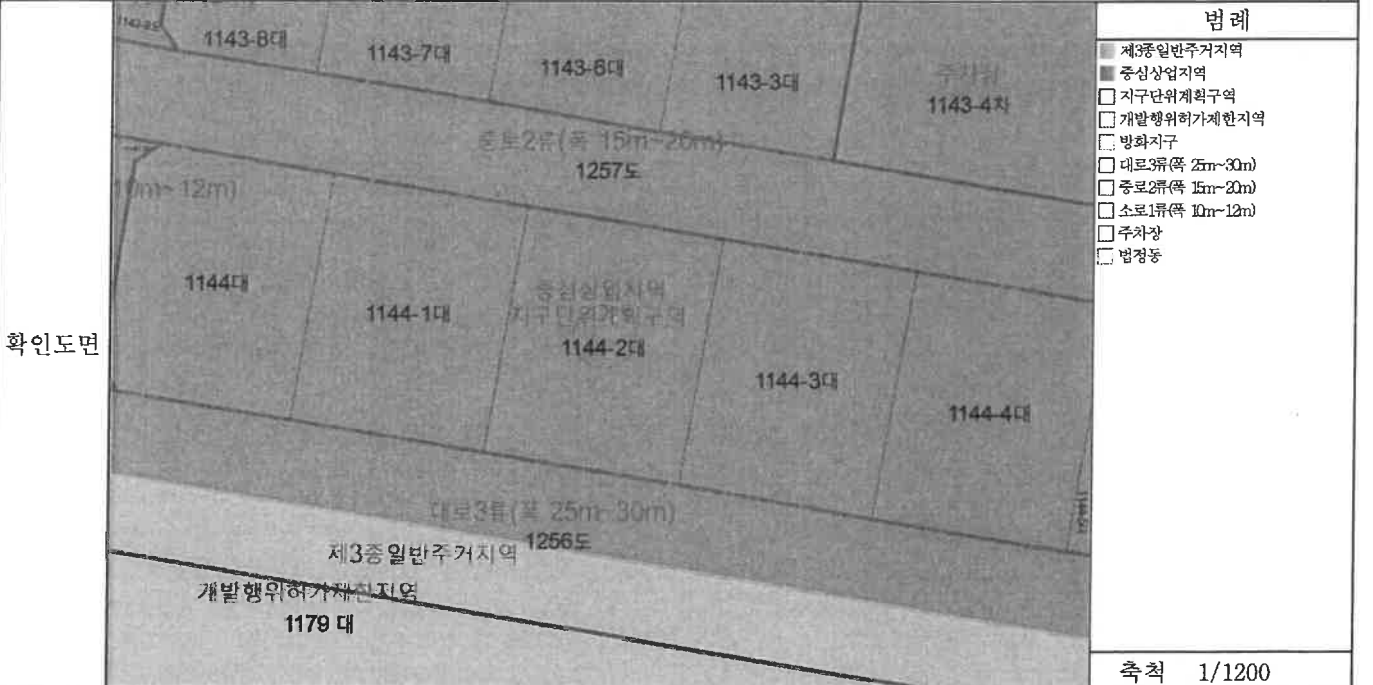
발행매수 : 1/2

발급일 : 2025/ 05/ 12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29, 3974 로-알프라자 9 인촌동		
			전화번호	032-428-0428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대	1,225.4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계남유치원-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계남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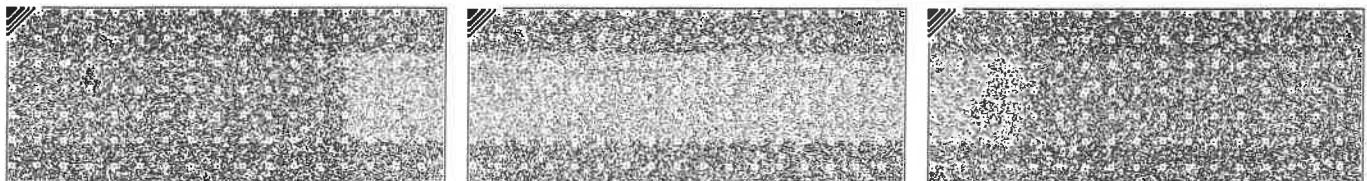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5/ 05/ 1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원미구청장인

수 수 료 전 자 결 제 인 원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제출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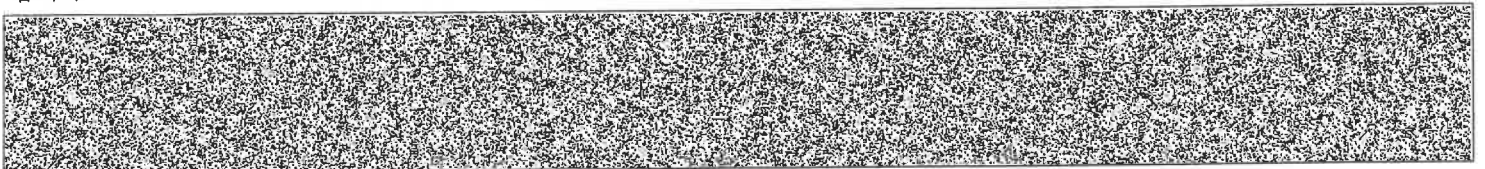
고유번호 1211-2004-001670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디아프갤러리3 제비동 제4층 제415호

【 표 제 부 】 ( 1동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4년2월1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디아프갤러리3 제비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업무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4층 978.42㎡ 지하3층 959.14㎡ 지하2층 1062.30㎡ 지하1층 1062.30㎡ 1층 685.88㎡ 2층 752.34㎡ 3층 750.83㎡ 4층 743.21㎡ 5층 743.21㎡ 6층 743.21㎡ 7층 743.21㎡ 8층 743.21㎡ 9층 743.21㎡ 10층 743.21㎡ 11층 743.21㎡ 12층 743.21㎡ 13층 743.21㎡ 14층 682.03㎡ 15층 548.88㎡	도면편철장 제95호
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디아프갤러리3 제비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25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업무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4층 978.42㎡ 지하3층 959.14㎡ 지하2층 1062.30㎡ 지하1층 1062.30㎡ 1층 685.88㎡ 2층 752.34㎡	도로명주소 2011년11월9일 등기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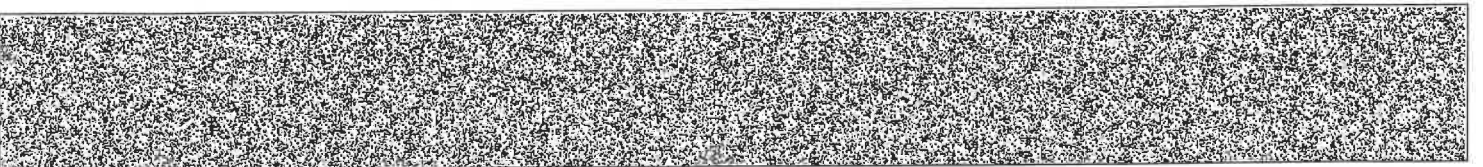
발행번호 121202JUN0120505G010040121000001641400017024001112

발급확인번호 AAOB-JBVN-6700

발행일 2025/0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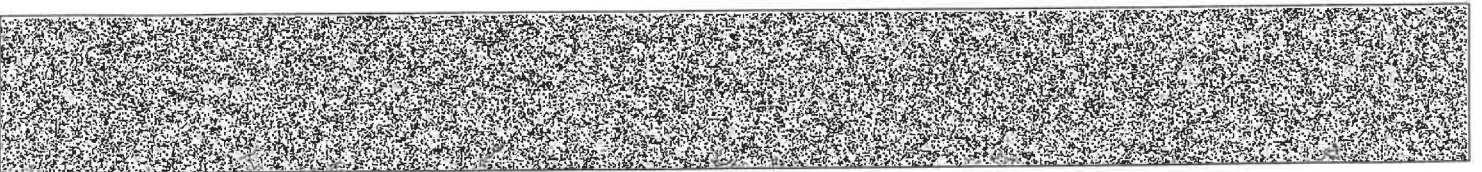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디아프갤러리3 제비동 제4층 제415호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3층 — 750.83㎡ 4층 — 743.21㎡ 5층 — 743.21㎡ 6층 — 743.21㎡ 7층 — 743.21㎡ 8층 — 743.21㎡ 9층 — 743.21㎡ 10층 — 743.21㎡ 11층 — 743.21㎡ 12층 — 743.21㎡ 13층 — 743.21㎡ 14층 — 682.03㎡ 15층 — 548.88㎡	
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디아프갤러리3 제비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25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업무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4층 978.42㎡ 지하3층 959.14㎡ 지하2층 1062.30㎡ 지하1층 1062.30㎡ 1층 — 685.88㎡ 2층 — 752.34㎡ 3층 — 750.83㎡ 4층 — 743.21㎡ 5층 — 743.21㎡ 6층 — 743.21㎡ 7층 — 743.21㎡ 8층 — 743.21㎡ 9층 — 743.21㎡ 10층 — 743.21㎡ 11층 — 743.21㎡ 12층 — 743.21㎡ 13층 — 743.21㎡ 14층 — 682.03㎡ 15층 — 548.88㎡	도로명주소 2013년3월18일 등기
4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44-2 디아프갤러리3 제비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25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업무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4층 978.42㎡	2016년7월4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16년7월4일 등기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디아뜨갤러리3 제비동 제4층 제415호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지하3층 959.14㎡ 지하2층 1062.30㎡ 지하1층 1062.30㎡ 1층 685.88㎡ 2층 752.34㎡ 3층 750.83㎡ 4층 743.21㎡ 5층 743.21㎡ 6층 743.21㎡ 7층 743.21㎡ 8층 743.21㎡ 9층 743.21㎡ 10층 743.21㎡ 11층 743.21㎡ 12층 743.21㎡ 13층 743.21㎡ 14층 682.03㎡ 15층 548.88㎡	
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디아뜨갤러리3 제비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25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업무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4층 978.42㎡ 지하3층 959.14㎡ 지하2층 1062.30㎡ 지하1층 1062.30㎡ 1층 685.88㎡ 2층 752.34㎡ 3층 750.83㎡ 4층 743.21㎡ 5층 743.21㎡ 6층 743.21㎡ 7층 743.21㎡ 8층 743.21㎡ 9층 743.21㎡ 10층 743.21㎡ 11층 743.21㎡ 12층 743.21㎡ 13층 743.21㎡ 14층 682.03㎡ 15층 548.88㎡	2024년1월1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24년1월3일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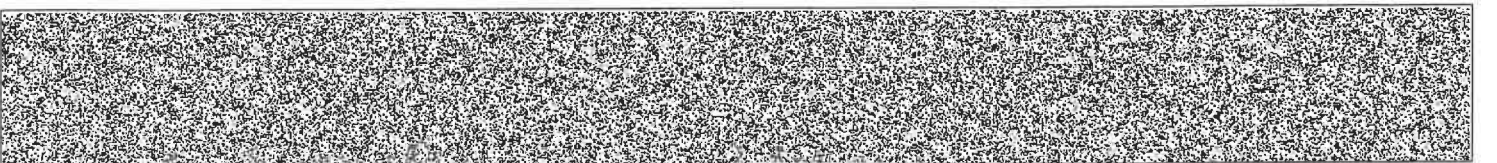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디아프갤러리3 제비동 제4층 제415호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del>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del>	대	<del>1225.4㎡</del>	2004년2월12일
2	<del>1.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44-2</del>	대	<del>1225.4㎡</del>	2016년7월4일 1토지 행정구역명칭변경 2016년7월4일
3	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대	1225.4㎡	2024년1월1일 1토지 행정구역명칭변경 2024년1월2일

【 표 제 부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4년2월12일	제4층 제415호	철근콘크리트조 17.41㎡	도면편철장 제95호
( 대지권의 표시 )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1225.4분의 2.68	2004년2월3일 대지권 2004년2월12일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4년2월12일 제15760호		소유자 허성행 490610-***** 서울 종로구 신교동 2-63
2	소유권이전	2004년4월14일 제42485호	2002년3월23일 매매	소유자 송희만 600129-*****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115-104
2-1	2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	2009년6월30일 제72919호	2008년12월26일 전거	<del>송희만의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13-13</del>
2-2	2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	2012년11월5일 제112840호	2012년2월6일 전거	송희만의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1길 22(본오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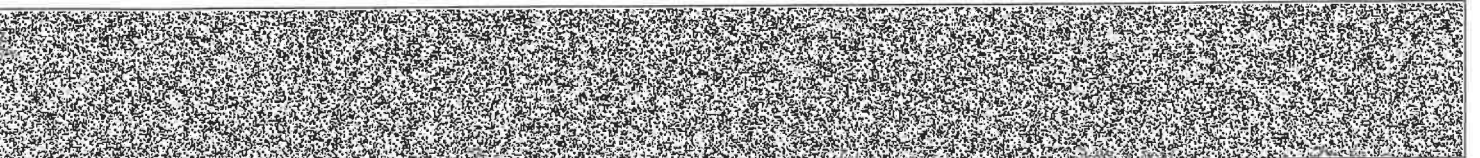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디아뜨갤러리3 체비동 제4층 제415호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가압류	2007년10월16일 제133328호	2007년10월1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가압류결정(2007 즈단5091)	<del>청구금액 금100,000,000 원</del> 채권자 <del>장은진</del> <del>안산시 상록구 본오동871 신안아파트 115동 104호</del>
4	3번가압류등기말소	2008년5월21일 제76055호	2008년5월14일 해제	
5	가압류	2022년4월11일 제30518호	2022년4월1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가압류 결정(2022카단1 01441)	청구금액 금752,000,000 원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184371-0003123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8층 (서울동부관리센터)
6	임의경매개시결정	2025년4월24일 제1918937호	2025년4월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 정(2025타경162 2)	채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변경전: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0111-4809385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강서여신관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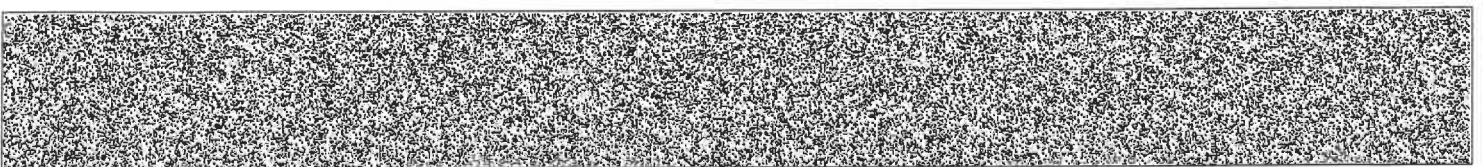
**【 을 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4년4월14일 제42486호	2004년4월13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3,160,000원 채무자 송희만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115-104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0136-0027690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 화곡2동지점 )
2	권세권설정	2004년4월30일 제50941호	2004년4월10일 설정계약	<del>권세금 금10,000,000원</del> <del>범 위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전부</del> <del>존속기간 2004년 4월 10일부터 2005년 4월 9일까지</del> <del>반환기 2004년 4월 10일부터 2005년 4월 9일까지</del>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디아프갤러리3 제비동 제4층 제4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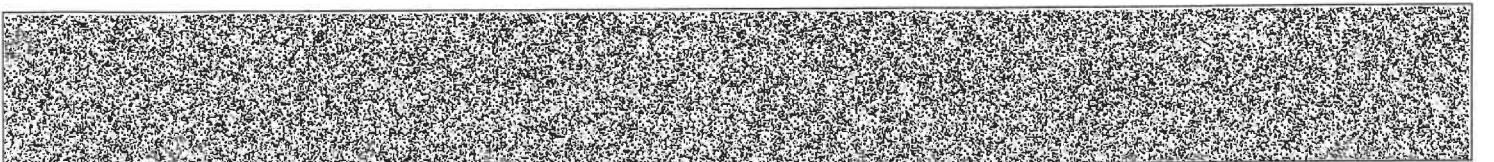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전세권자 장두화 781203-***** 부산 영도구 청학동 129-10
2-1				2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04년4월30일 부가
3	2번전세권설정등기 말소	2005년5월20일 제68839호	2005년5월20일 해지	
4	근저당권설정	2006년5월11일 제55075호	2006년4월8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30,000,000원 채무자 송희만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115-104 근저당권자 구분중 790212-*****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1-11 103호
5	4번근저당권설정등 기말소	2007년2월23일 제25448호	2007년2월23일 해지	
6	근저당권설정	2009년6월30일 제72920호	2009년6월3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36,000,000원 채무자 송희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13-13 근저당권자 김현삼 57040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2-20 웰리스오피스텔-809 이성근 87033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40-10 신광빌라-402
7	6번근저당권설정등 기말소	2010년7월20일 제72438호	2010년7월20일 해지	
8	주택임차권	2012년9월4일 제89702호	2012년7월2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 (2012카기583)	임차보증금 금45,000,000원 범 위 건물외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10년 7월 6일 주민등록일자 2010년 7월 20일 점유개시일자 2010년 7월 20일 확정일자 2010년 7월 20일 임차권자 정문훈 85041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디아프3 바-415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디아뜨갤러리3 제비동 제4층 제415호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del>8-1</del>				<del>8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12년9월4일 부기</del>
9	전세권설정	2012년11월5일 제112841호	2012년11월2일 설정계약	전세금 금45,000,000원 범 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4년 11월 1일까지 전세권자 박규라 89041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25, 비동 415호(중동,디아뜨3)
10	8번주택임차권등기 말소	2012년11월5일 제112884호	2012년11월5일 해지	
11	9번전세권설정등기 말소	2014년11월4일 제118434호	2014년11월4일 해지	
<del>12</del>	전세권설정	2014년11월13일 제122439호	2014년10월11일 설정계약	전세금 금50,000,000원 범 위 건물의전부 존속기간 2016년 11월 02일까지 전세권자 장미현 77123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25, 415호(중동,디아뜨3)
<del>12-1</del>				<del>12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14년11월13일 부기</del>
13	12번전세권설정등기 말소	2019년3월26일 제25022호	2019년3월26일 해지	
14	주택임차권	2023년5월8일 제34309호	2023년4월12일 인천지방법원부 천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 (2023카임321)	임차보증금 금50,000,000원 범 위 건물의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19년3월15일 주민등록일자 2019년3월26일 점유개시일자 2019년3월26일 확정일자 2019년3월26일 임차권자 이대현 720909-*****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25, 비동 415호 (중동,디아뜨갤러리3)
14-1				14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23년5월8일 부기

-- 이 하 여 백 --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디아뜨갤러리3 제비동 제4층 제415호

관할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5년 5월 12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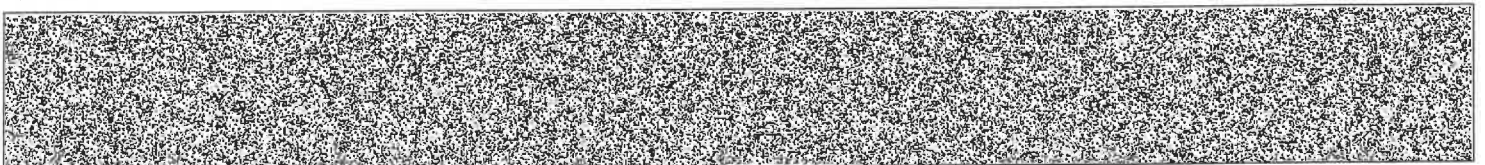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1202JUN0120505G010040121000001641400087024001112

발급확인번호 AAOB-JBVN-6700

발행일 2025/05/12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 [ 주의 사항 ]

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탈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1211-2004-001670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2 디아뜨갤러리3 제비동 제4층 제415호

### 1. 소유지분현황 ( 갑구 )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주 소	순위번호
송희만 (소유자)	600129-*****	단독소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1길 22(본오동)	2

###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 갑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대상소유자
5	가압류	2022년4월11일 제30518호	청구금액 금752,000,000 원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송희만
6	임의경매개시결정	2025년4월24일 제1918937호	채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변경전: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송희만

###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 을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대상소유자
1	근저당권설정	2004년4월14일 제42486호	채권최고액 금23,160,000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송희만
14	임차권설정	2023년5월8일 제34309호	임차보증금 금50,000,000원 임차권자 이태현	송희만

## [ 참 고 사 항 ]

- 가.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 나.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 다.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 라.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8. 1>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2쪽 중 제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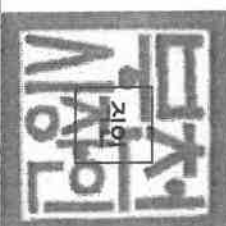
건물ID	2120041970017711	고유번호	4119210800-3-11440002	명칭	디아프갤러리3B동	호수기구수/세대수	0호/282기/구/0세대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번	1144-2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항로 225 (중동)	
※대지면적	1,225.4 m <sup>2</sup>	연면적	14,914.22 m <sup>2</sup>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835.17 m <sup>2</sup>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0,852.06 m <sup>2</sup>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건폐율	68.15 %	※용적률	885.59 %	높이	56.35 m	주용도	주용도
※조경면적	m <sup>2</sup>	※공개 공지/공간 면적	m <sup>2</sup>	※건축선 후퇴면적	m <sup>2</sup>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총수
						지붕	지하: 4층, 지상: 15층
						※건축선 후퇴거리	동
						(철근)콘크리트	m <sup>2</sup>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sup>2</sup> )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sup>2</sup> )
주1	지하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914.58	주1	지하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전기실	105.32
주1	지하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계실	63.84	주1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994.76
주1	지하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959.14	주1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발전기실	67.54
주1	지하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956.98	주1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2종근린생활시설	685.88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2025년 5월 12일

### 부천시장



담당자: 진 화: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mmx210mm[백상지 800g/m<sup>2</sup>]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2쪽 중 제2쪽)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명칭

디아프갤러리3B동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282가/0세대

지번 **지번 관련 주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항로 225 (중동)

1144-2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차장					승강기	인허가 시기
			구분	육내	육외	인근	면적		
건축주	허성행	490610-1*****					2 대	대	허가일 2002.3.21.
설계자	김진욱 (주)조임건축사사무소	강남구-건축사사무소-950	자주식	106 대 3825.46 m <sup>2</sup>	대	대	대	대	취공일 2002.4.17.
공사감리자	김진욱 (주)조임건축사사무소	강남구-건축사사무소-950	기계식	대	대	대	대	대	사용승인일 2004.2.3.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박재현 대덕건설(주)	경기도-건축공사업-10-0007	전기차	대	대	대	대	대	

*건축물 인증 현황		건축물 구조 현황		건축물 관리 현황	
인증명	유효기간	성능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관리계획 수립 여부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66.2점, 에너지소비총량: 0kWh/m <sup>2</sup>		적용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지하수위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기초형식 [ ] 지내력기초 [ ] 파일기초	미해당	종류
				구조설계해석법: [ ] 동적해석법 [ ] 동적해석법	점검유효기간
					2023.2.6.~2026.2.5.

변동사항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변동일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004.2.3.	2004.02.03	신축에의한 신규작성	2004.2.19.	2004.02.17 표시변경신청에의거 1층 109호 제1층근린생활시설39.56㎡을 제2층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표시변경	
2004.2.17.	2004.02.17	표시변경신청에의거 1층 107호 제1층근린생활시설34.19㎡을 제2층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표시변경	2004.3.10.	2004.03.10 표시변경신청에의거 1층 102호 제1층근린생활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8. 1>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건축물현황

[1쪽 중 제1쪽]

건물ID	2120041970017711	고유번호	4119210800-3-11440002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번	1144-2	도로명주소	0호/282가구/0세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항로 225 (중동)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1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2종근린생활시설	752.34	주1	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743.21
주1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2종근린생활시설	750.83	주1	1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682.03
주1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743.21	주1	1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548.88
주1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743.21			-이하여백-		
주1	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743.21					
주1	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743.21					
주1	8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743.21					
주1	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743.21					
주1	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743.21					
주1	1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743.21					
주1	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743.21					

297mm×210mm[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3. 8. 1.>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변동사항

(1쪽 중 제1쪽)

건물ID	2120041970017711	고유번호	4119210800-3-11440002	명칭	디아포갤러리3 B동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282가구/0세대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번	1144-2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항로 225 (중동)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004.3.22.	제2종근생으로 표시변경 2004.03.22 표시변경신청에의거 1층 108호 제1종근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표시변경.	2016.7.4.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 3034 호에 의거 행정구역 변경 정기점검(점검기간 : 2018.02.03 까지, 보고일 : 2017.11.15)
2004.10.12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표시변경. 2004.10.12 표시변경신청에의거 1층 10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표시변경.	2017.11.17.	정기점검(점검기간 : 2020.02.03 까지, 보고일 : 2020.02.17)
2004.10.28.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표시변경. 2004.10.27 표시변경신청에의거 3층 306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표시변경.	2020.12.4.	건축관리과-21571(2020.12.04.)호 표시변경신청 처리에 의거 3층 306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표시변경
2005.2.17.	제2종근린생활시설으로 기재변경 2005.02.17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에의거 1층 104호 제1종근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으로 기재변경	2023.4.20.	정기점검(점검기간 : 2023.02.06 까지, 보고일 : 2023.04.17)
2007.8.24.	제2종근생(일반음식점)으로 표시변경 2007.08.24 표시변경신청에의거 지상2층 201호, 204호 제1종근생을 제2종근생(일반음식점)으로 표시변경	2024.1.1.	건축관리과-8031(2023. 4.28.)호 표시변경 신청 처리에 따라 206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한의원)로 표시변경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3953호 시행 2024. 1. 1.에 의거 행정구역 변경
2008.4.1.	제2종근생(부동산중개업소)으로 표시변경 2008.03.28. 표시변경신청에의거 지상1층 110호 제1종근생을 제2종근생(부동산중개업소)으로 표시변경		- 이하여백 -
2008.5.15.	제2종근생(부동산중개업소)으로 표시변경 2008.05.14 집합건축물전유부분변경신청에 의거 2층 207호가 207호, 208호로 분할되어 재작성		
2008.5.16.	제2종근생(부동산중개업소)으로 표시변경 2008.05.15 표시변경신청에 의거 2층 207호 제1종근생을 제2종근생(부동산중개업소)으로 표시변경		
2009.4.23.	제2종근생(제조업소)으로 표시변경 2009.04.21. 표시변경신청에의거 지상1층 111호 제1종근생을 제2종근생(제조업소)으로 표시변경		
2012.9.18.	※시건축과-3292(12.09.13)호에의거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등재 2013.11.22.		
2015.12.10.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표시변경 정기점검(점검기간 : 2016.02.03 까지, 보고일 : 2015.12.10)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8. 1>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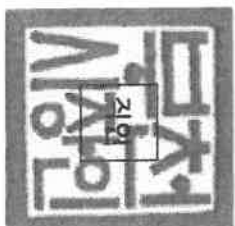
(2쪽 중 제1쪽)

건물ID	2220041970064321	고유번호	4119210800-3-11440002	명칭	다이포갤러리3B동	호명칭	415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번	1144-2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항로 225 (중동)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소	소유권 지번	변동일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송화만			
주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17.41	600129-1*****	경기도 인천시 상록구 총장로1길 22(본동)			2012.11.5.
					공용부분		- 이허여백 -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이 건축물대장은 현소유자만 표시한 것입니다.				
주	각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주차장	8.37					
주	각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 승강기실, 복도, 화장실	7.1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부천시장



담당자: 전 화:

발급일자: 2025년 5월 12일

\* 경계벽이 없는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음을 기재합니다.

297mm×210mm [백상지 (80g/㎡)]



